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6.>

지정번호: 제 호

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
지정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: (법인등록번호)

3. 소재지:

4. 지정업무의 범위:

5. 유효기간: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 인

210mm×297mm[백상지 150g/㎡]